

## 6 행정운영경비

### 6-1. 기본경비 집행현황

-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, 공공요금, PC 등 물품구입,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. 우리 금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기본경비 (B)	비율 (B/A)	비 고
합 계	245,496	3,350	1.36	
일반운영비	245,496	894	0.36	
여 비		1,895	0.77	
업무추진비		360	0.14	
직무수행경비		96	0.04	
자산취득비		105	0.04	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행정운영경비의 설정' 중 기본경비 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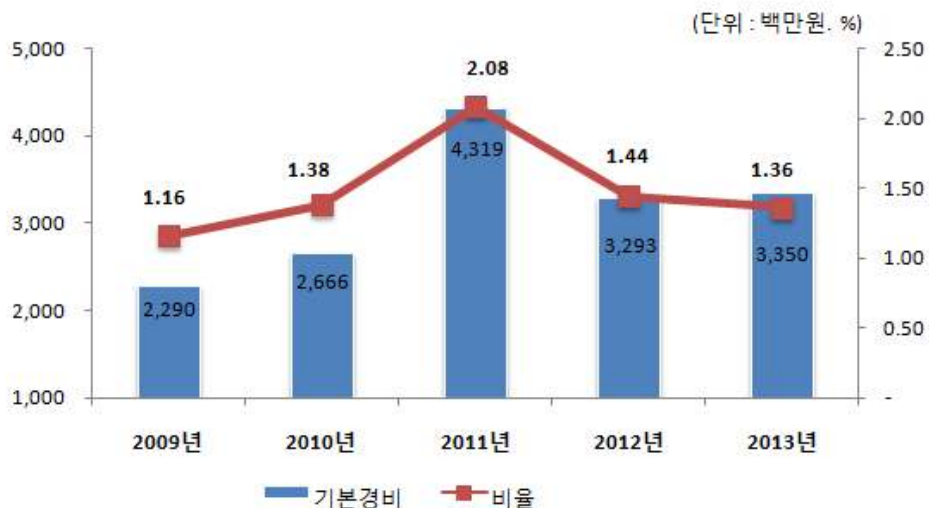
#### ❖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	197,180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
기본경비	2,290	2,666	4,319	3,293	3,350
비율 (%)	1.16	1.38	2.08	1.44	1.36

- ▶ '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

####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



## 6-2. 자치단체 청사 관리·운영현황

- 우리 금정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2014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29㎡이 적습니다.

(단위 : ㎡, 백만원)

금정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(㎡)	금정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(㎡)	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(㎡)	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(백만원)
5,624㎡	6,453㎡	-829㎡	0

- ▶ 「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」의 지방청사(면적)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

## 6-3. 인건비 집행현황

- 우리 금정구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(A)	인건비 (B)	비율 (B/A)	비고
합 계	245,496	47,056	19.17	
인건비(101)		37,978	15.47	
직무수행경비(204)		1,148	0.47	
포상금(303)		1,944	0.79	
연금부담금 등 (304)		5,987	2.44	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(7개 통계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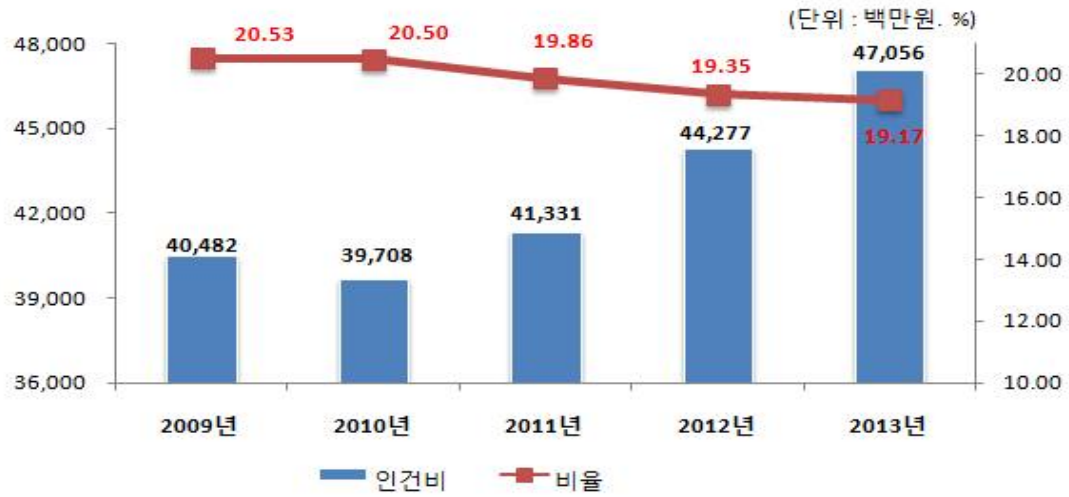
### ❖ 인건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(A)	197,180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
인건비(B)	40,482	39,708	41,331	44,277	47,056
인건비비율(B/A)	20.53	20.5	19.86	19.35	19.17

- ▶ '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

## 인건비 연도별 변화



### 6-4. 업무추진비 집행현황

☐ 우리 금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업무추진비 (B)	비율 (B/A)	비 고
합 계	245,496	364	0.15	
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3-01)	245,496	193	0.08	
시책추진업무추진비 (203-03)		170	0.07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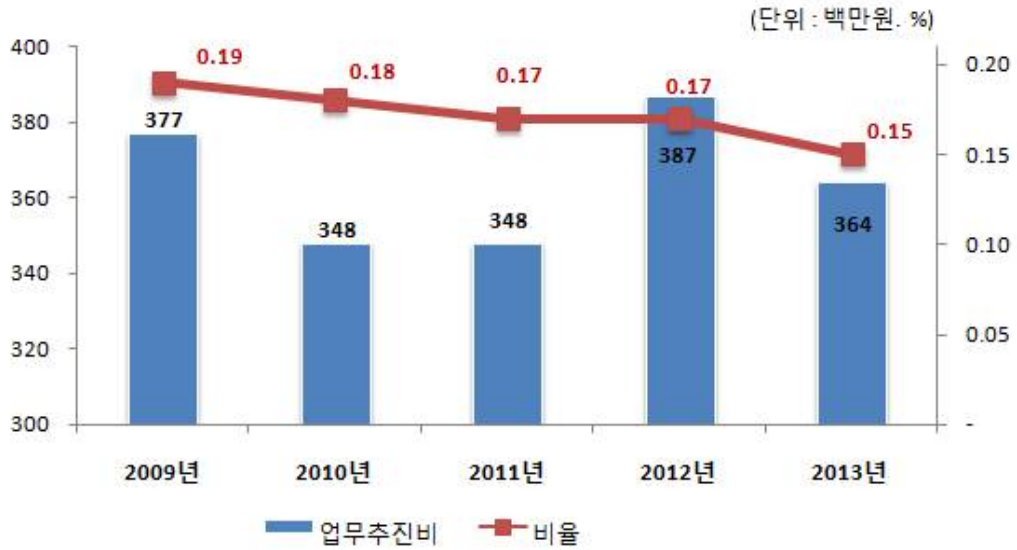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3년 결산결과 203-01, 203-03 집행총액

#### ❖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	197,180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
업무추진비	377	348	348	387	364
비율 (%)	0.19	0.18	0.17	0.17	0.15

##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



☞ 세출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
◆ '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【별첨 1】

## 6-5. 국외여비 집행현황

☐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출장기간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총 출장 인원(명)	국외여비 집행액 (백만원)
2013.3.5. ~ 3.9.	▪선진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구청 업무수행에 반영	홍콩 마카오 심천	8명 (단체장 미포함)	9.2
2013.4.2. ~ 4.5.	선진 재난방재 우수사례 벤치마킹	일본(큐슈)	10명 (단체장 미포함)	10
2013.4.9 ~ 4.13	▪ 도로,광장,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선진사례조사	홍콩,심천, 마카오	10 (단체장 미포함)	12.2
2013.4.18 ~ 4.27	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	미국 서부	2 (단체장 미포함)	5
2013.4.19 ~ 4.24	▪ 선진교통정책, 교통시설 등 현지체험 및 비교시찰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▪ 우수 교통시책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교통행정 여건 개선	호주	10명 (단체장미포함)	19.6
2013.5.6 ~ 5.11	▪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	중국 상해, 홍콩	4 (단체장 미포함)	5
2013.9.4. ~ 9.7.	▪ 복지·도시정비 현장방문 및 시찰	일본(동경)	16명 (단체장 미포함)	18
2013.9.30. ~ 10.3.	▪복지·환경분야 현장방문 및 시찰	일본 (후쿠오카)	11명 (단체장 미포함)	10
2013.12.26. ~ 12.28.	▪직원상호파견 협정서 교환 및 교환근무 세부안 협의	중국 (상해)	4명 (단체장 미포함)	2.6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(202-03 국외업무여비, 202-04 국제화여비)

## 6-6.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

☐ 우리 금정구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세출결산액 (A)	의회경비 집행액 (B)	의회경비 비율 (B/A)	지방의원 정수 (C)	1인당 의회경비 (B/C)
245,496	665	0.27	13	51

▶ 대상 회계 및 집행액 : 일반회계, '13년 결산결과 의회비(205-01~09) 집행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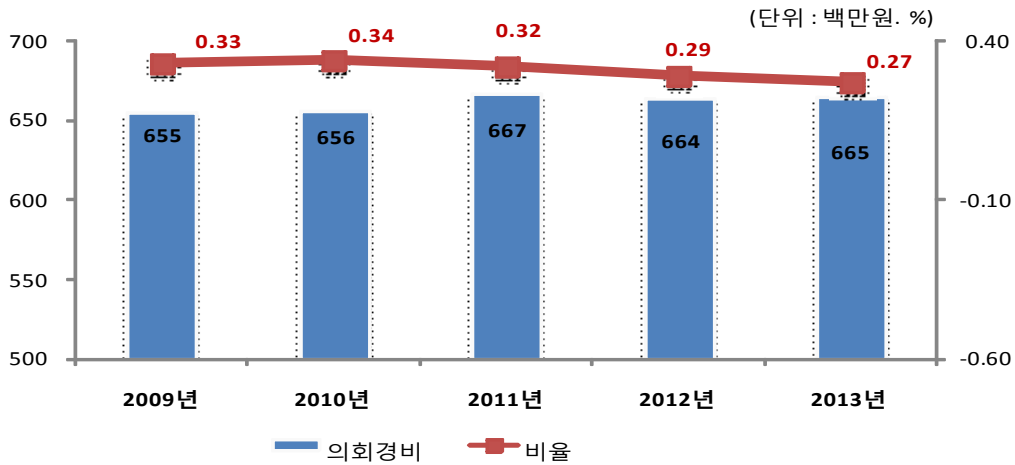
▶ 의원 정원 : 13명 ('13.12.31 현재) 【별첨4】

❖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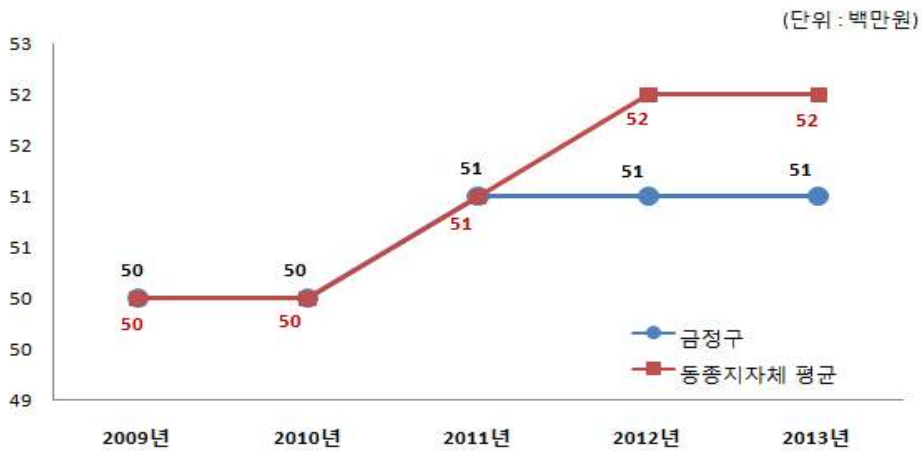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	197,180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
의회경비	655	656	667	664	665
의원 정수(명)	13	13	13	13	13
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(%)	0.33	0.34	0.32	0.29	0.27
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	50	50	51	51	51

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



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



## 6-7.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국외여비 집행액 (A)	지방의원 정수(명) (B)	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(천원)(A/B)
25	13	2

▶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, 지방의원 정수는 2013.12.31일 기준 【별첨4】

### ❖ 6-7.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

(단위 : 백만원, 명)

출장기간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총 출장 인원(명)	국외여비 집행액 (백만원)
2013.4.18~4.27	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	미국 서부	의원 6명	11
2013.5.6~5.11	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	중국 상해, 홍콩	의원 7명	14

▶ 201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,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

## 6-8. 맞춤형복지비 현황

☐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(도지사, 군수, 구청장)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, 2013년 우리 금정구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대상인원 (A)	세출 결산액(B)	맞춤형 복지비(C)	비율 (C/B)	1인당 평균배정액 (C/A)
871	245,496	1,246	0.51%	1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
### ❖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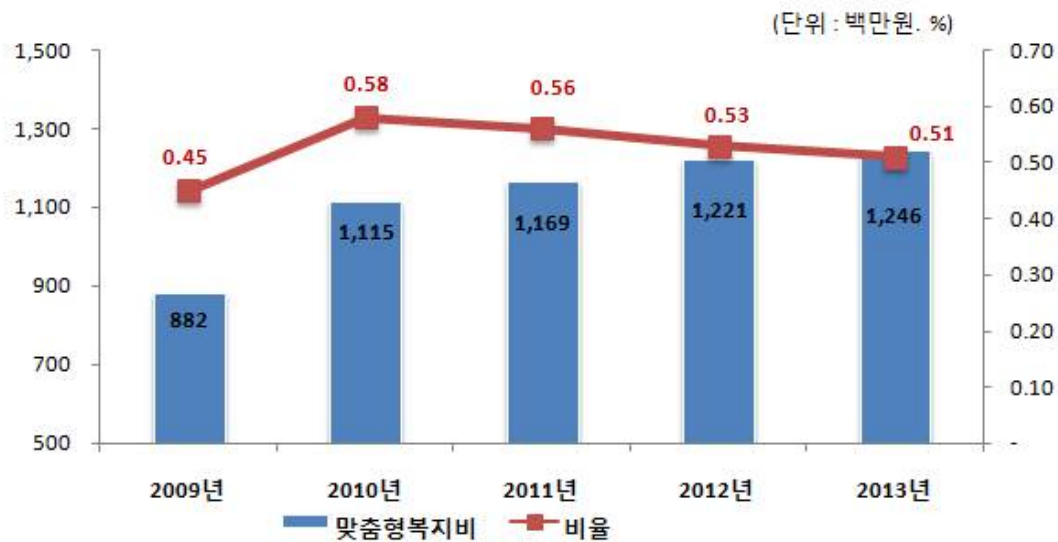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대상인원 (A)	812	822	820	837	871
세출결산액 (B)	197,180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
맞춤형 복지비 (C)	882	1,115	1,169	1,221	1,246
비율 (%) (C/B)	0.45	0.58	0.56	0.53	0.51
1인당 평균배정액 (C/A)	1	1	1	1	1

#### ☞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현황

- 2009년 집행액은 882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45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
- 2010년 집행액은 1,115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58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
- 2011년 집행액은 1,169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56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
- 2012년 집행액은 1,221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53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
- 2013년 집행액은 1,246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51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

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





## 6-9. 연말지출 비율

- 우리 금정구에서 2013년 11월~12월 중에 지출(원인행위)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연말 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비율 (B/A)
계	33,264	2,506	7.54
시설비 (401-01)	33,167	2,501	7.54
감리비 (401-02)	61	0	0
시설부대비 (401-03)	27	5	18.88
행사관련시설비 (401-04)	9	0	0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분청분만 해당(직속기관, 사업소 등은 제외)

### ❖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 (A)	34,571	33,114	36,429	32,049	33,264
연말 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5,389	3,658	4,362	4,093	2,506
비율 (%) (B/A)	15.59	11.05	11.97	12.77	7.54

###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



- ☞ 연말지출 비율은 11~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하반기 균형집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결과 '13년에는 전년도 대비 5.3% (16억) 감축한 25억원입니다.

## 6-10.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

☐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3연말 체납누계액(A)	2012연말 체납누계액(B)	증감액(A-B)
합 계	14,150	14,036	114
지방세	1,470	1,544	-74
세외수입	12,680	12,492	188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
- ☐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자금난 등의 경제상황에 따른 납세여력 부족, 납세태만의 결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.
- ☐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고질적인 체납세액이 증가하는 등 징수환경이 열악하지만,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, 체납액징수특별전담팀 구성, 체납차량 주야간번호판영치, 예금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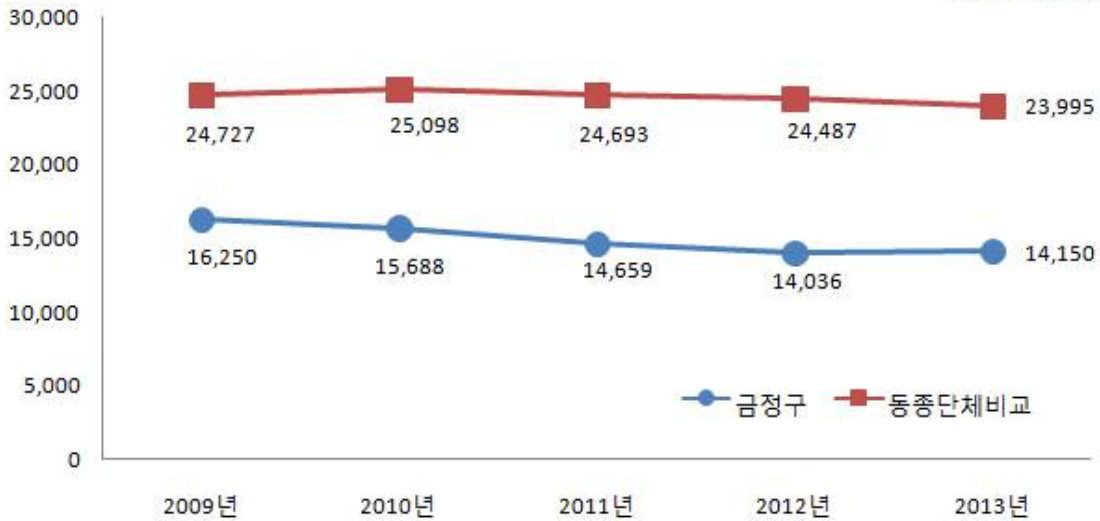
## ❖ 체납액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합 계	16,250	15,688	14,659	14,036	14,150
지방세	1,712	1,188	1,319	1,544	1,470
세외수입	14,538	14,501	13,340	12,492	12,680

###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

(단위 : 백만원)



### ☞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

- 2009년 : 재산세 과표적용율 상승으로 소폭 증가 (65% ⇒ 70%)
- 2010년 : 체납이월액 감소 (1,345백만원 ⇒ 969백만원, 376백만원 감소)
- 2011년 : 재산세 감면철회(글로벌금융위기 관련 감면제도 2010.12.31 일몰)
- 2012년 : 체납이월액 증가 및 지방세 세제개편
- 2013년 : 체납이월액 누증과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, 세외수입 경진대회 개최와 지방세 체납액징수특별전담팀 운영 등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